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



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3. 2017고합741]

【전문】

【피고인】 피고인 1 외 4인【검사】 송정은(기소, 공판), 이주현(공판)【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외 3인

【주문】

1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엠피그룹을 벌금 1억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엠피그룹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허위 유통마진 지급으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공소외 3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공소외 4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광고비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광고비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병령)의 점, 차명관리가맹점 권리금 지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굿타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사업활동방해로 인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엠피그룹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업활동방해로 인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유】

]

[이유]

[이유]

[이유]

1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유】

]

[이유]

1